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정재훈
전화 043-299-5204

보도자료
2022. 9. 6.(화)

제 목

초임검사의 도움으로 사망자 신분 13년 만에 새 삶 찾은 50대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올해 임용된 초임검사가 배당 받은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13년 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되어 의료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운전면허 취득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검사가 직접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였음
- 이후 22년 7월 청주지방법원에서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고, 그 결과 A씨는 ▲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신청, ▲ 의료보험 가입 후 병원 치료, ▲ 주거급여 지원, ▲ 운전면허 취득 및 의무보험 가입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 청주지검은 실종선고 취소 이후에도 주민등록 회복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A씨를 위하여 주민등록 회복 신청 절차 안내, 행정복지센터 동행 등의 도움을 제공하였고, 8월 22일경 드디어 A씨의 임시신분증이 발급되었고 조만간 정식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됨
- 청주지검은 앞으로도 공익의 대변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1

실종선고 경위 및 사망자로서의 삶

- A씨(53세, 무직)는 1988년 사업 실패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생사불명 상태로 실종신고 된 뒤 2009년 8월 법원에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됨

※ 실종선고 시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28조)

- A씨는 사망자 신분이 되어 ▲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등 복지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모텔에 거주하며 일용노동직을 전전하고, ▲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병원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으며, ▲ 면허를 취득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됨
- A씨는 본인이 실종선고 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주민등록 회복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그대로 생활하였다고 함
- 위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던 중, A씨는 무면허 및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받은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

2 검사의 실종선고 취소 청구

- 22년 3월 사건을 배당받은 청주지검 주임검사는 당시 검사 임용 2개월 된 초임검사로, 단순히 무면허운전으로 종결되었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A씨가 실종선고로 공부상 사망 처리된 사실을 발견함
- 검사는 실종선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가 실종선고로 인하여 겪고 있는 생활고 및 문제점을 인지한 후,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A씨가 면허 취득 및 의무보험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에 이르렀고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계속적인 범죄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함
- 이에 같은 범죄가 반복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A씨에게 사회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부여된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민법 제29조 제1항)으로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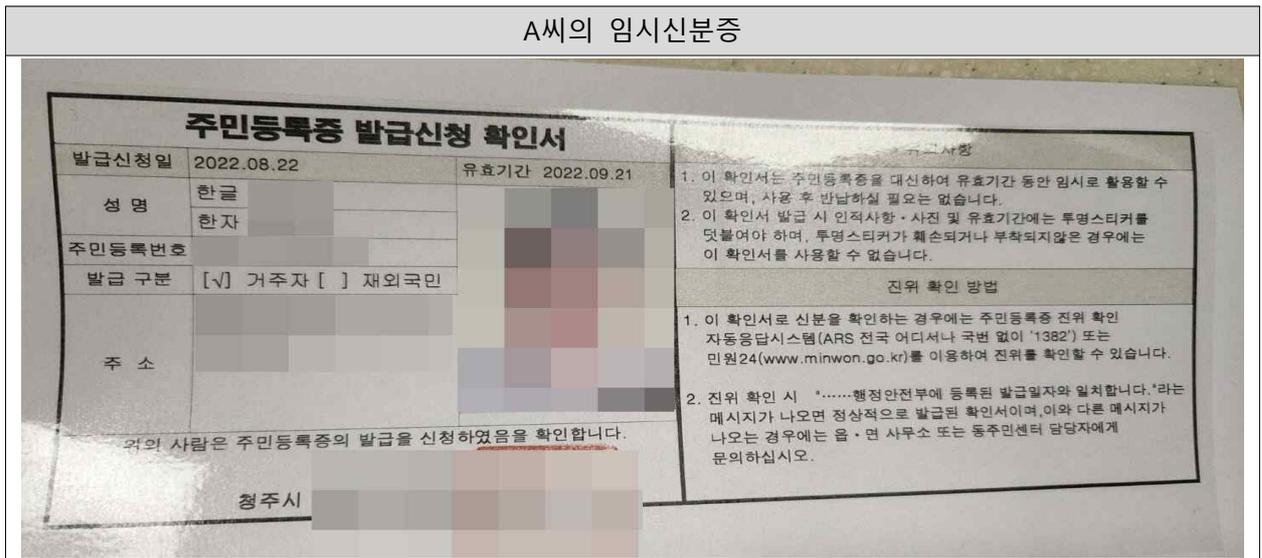
민법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A씨는 장기간 사망자 등록되어 있던 상태로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청구를 망설였으나, 검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절차 진행에 동의함
- 검사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을 확인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A씨의 주민등록 조회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함

- 22년 6월 검사는 A씨의 무면허운전 등 잘못에 대한 처벌을 위해 약식 기소를 하면서 검사의 권한으로 법원에 직접 실종신고 취소를 청구함
- 22년 7월 2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및 실종 신고 취소심판이 선고됨

3 실종신고 취소로 인한 '새 삶'

- 실종신고 취소 후, 검사는 직접 A씨에게 결과 및 권리회복 후속절차를 안내하였고, A씨는 '저 이제 살아난 거네요'라며 감회를 표시함
- 8월 하순경 A씨는 청주지검 검찰수사관과 동행하여 주민등록 회복을 위한 신고 절차를 마치고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은 상태로, 향후 주민등록 재등록 시,
 - ▲ 주민등록증 발급,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및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하고,
 - ▲ 실주거지(월세, 모텔비 포함)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 모텔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주택 거주자 이주사업지원'을 통한 임대주택 연계도 가능함



- 검찰은 필요시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추가 지원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4 향후 계획

- 향후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